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41994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4199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단21987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박종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석광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근

변론 종결 2020. 9. 17.

판결 선고 2020. 10. 15.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단21987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6. 피고의 총 주식 및 운영권(전기공사업 면허 포함)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 양도 내용과 범위

- 1) 피고가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증권(이하 '조합증권'이라 한다) 전부
- 2) 피고가 보유한 총주식 및 운영권(전기공사업 면허 포함)(이하 '면허권'이라 한다) 전부
- 3) 피고의 업무에 관한 제반 서류와 그 증빙자료 일체

제2조 : 피고가 보유한 면허의 업종 및 번호

- 1) 업종 : 전기공사업
- 2) 면허번호 : C

제3조 : 양도, 양수 대금

- 1) 양도, 양수 대금은 4억 3,000만 원으로 한다.
- 2) 조합증권대금은 양도, 양수 대금과 별도로 공제조합의 현 시가로 정한 금액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4조 : 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 :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단, 계약금이 지불됨으로써 본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2) 중도금 : 2억 원은 2017. 11. 20.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

3) 잔금 : 1억 3,000만 원과 조합증권대금은 2017. 12. 15.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단, 조합증권대금에서 발생한 대출 및 이자는 조합증권대금에서 공제하고 지불기로 한다).

제5조 : 회사 재무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심사'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는 한시라도 피고의 재무구조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피고는 심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잔금 지불일 이전 또는 쌍방 합의한 년 월 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심사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원고가 피고의 재무구조를 심사함에 있어서 피고는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무(어음 보증 또는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 또는 재정보증) 또는 회사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도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 피고의 책임과 의무

2)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지불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별지 첨부)을 완전히 구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 위약금

피고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원고가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11. 20.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2. 8.까지는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7. 12. 8.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12. 11.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서울 서초구 D)로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7. 12. 15.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12. 18. 다시 원고의 주소지로 위 나.항 기재 내용증명우편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20. 피고의 계좌로 중도금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21. 직원을 통해 원고에게 위 나. 및 다.항 기재 내용증명우편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중도금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바. E(피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2009년경 ~ 2011년경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F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계약서 날인, 중도금 지급 독촉 등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2018. 1. 23. 원고에게 중도금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대금 지급일자가 조금 미루어졌다.

원고는 피고와 약속한대로 2018. 1. 15.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주식과 운영권(전기공사업 면허 포함)을 양수받으려고 하나 피고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8. 2. 28.까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주식과 운영권(전기공사업 면허 포함)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2억 원과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8. 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아.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합의해제에 의해 반환계좌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요청서를 보냈고, 피고는 다음 날인 2018. 6. 5. 원고에게 1억 8,000원(=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7. 12. 20.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지 않았고, 설령 해제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잔금 지급기일인 2017. 12. 15.이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회사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었는데, 피고가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통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 피고가 계약금을 몰취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가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행의 최고나 제반서류 교부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7. 12. 21. 피고의 해제통보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요청으로 연장된 중도금 지급기한인 2017. 12. 8.이 지나도 중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7. 12. 11. 계약해제통지를 발송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7. 12. 18. 재차 계약해제통지를 발송한 점, 원고가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통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중도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는 2018. 1. 23.에도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중도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제1의 사.항 기재 내용증명우편에서 주장한 것처럼 당사자의 합의로 대금 지급기일이 미루어졌다거나 2018. 1. 15.을 잔금지급기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가 2018. 1. 23. 원고에게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고가 2018. 2. 22. 피고에게 계약유지를 전제로 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유지 또는 해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계좌를 알려준 다음 날 피고가 1억 8,0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 또는 위약금을 포함한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3, 4호증의 기재로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은희

판사김지영

판사신세희